

SNS에 게시한 글, 마음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최근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는 SNS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이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 라는 반응을 보였다” 등의 문구를 기사 말미에 넣는 것이다. 가끔은 특정인이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보도하는 기사도 있다. 몇 해 전 축구선수 기성용이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쓴 글이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고, 법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SNS 글은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의해 공개된다. 과거에는 기자들이 은밀한 취재를 위해 문 앞에서 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면,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SNS의 글을 검색하는 것으로 대체된 듯하다.

그렇다면 기사가 SNS의 글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 이로 인해 작성자의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는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화 상담을 요청한 Y씨가 이런 경우이다. Y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친구 공개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모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었다. Y씨와 친구를 맺은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제한해서 올렸으며, 이 글이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어 곤란한 지경을 겪고 있다면서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해왔다.

언론이 Y씨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SNS는 내 방, 또는 내 일기장처럼 사적인 공간일까?

사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공간이다. SNS에 글을 게시하는 목적은 자신의 글을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알아주고 호응해 줌으로써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단 글을 게시한 이상 다른 이들이 공유 또는 리트윗 함으로 인해 나와 관계 맺지 않은 제3자에게 순식간에 전

파되며, 내가 삭제한 이후에도 글은 어디엔가 남고 언제든지 검색될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함이니, 일기장에 적는 글과 달리 SNS는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SNS의 글을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인지 여부도 역시 애매모호해지는 것이다.

Y씨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영국의 언론자유구제기구인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의 결정을 소개했다. PCC에 따르면 SNS 보도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보 및 보도의 성격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즉 SNS의 글이 개인신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비록 소수의 지인들에게만 공개하여 일반인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게시한 내용이 순전히 개인 신상에만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의 대상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며 공적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이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씨의 경우 “여자친구 공개모집”이라는 주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것이며, 보도의 내용도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Y씨의 글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 법원의 확립된 논리가 아니므로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조정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인지 Y씨는 아직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과연 Y씨가 조정을 신청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까. 나 또한 SNS 이용자로서 이런 경우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상담이다.